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2016년 9월

용석 /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I.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

1. 일제 식민지 시기 병역거부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일제는 1939년 조선 땅의 여호화의 증인 38명을 치안유지법 및 불경죄로 체포한 것이 그 시작이다. 여호화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도 일제의 군대를 거부했다. 다만 이 당시의 병역거부는 일제에 저항하는 적극적인 사회운동 차원이기보다는 전쟁터에 끌려가기를 피하는 방식, 다시 말해 징병을 피하기 위해 시골이나 산속으로 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예컨대 재일조선인 서경식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버지가 징용됐을 때, 벌써 우리 아버지나 조선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치시마 열도(쿠릴 열도)나 남양군도로 파견되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도망친 거죠.”¹ 이처럼 많은 조선인들이 징집이나 징용을 피해서 도망쳤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2. 유신시대 병역거부

1970년대는 한국 병역거부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들어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군사주의와 독재를 강화한다. 징병률 100% 달성을 목표로 1973년 ‘병부행정 쇄신지침’을 내린 뒤에는 심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화의 증인 이춘길 씨나 김종식 씨처럼 훈련소에서 집단 거부를 했다고 구타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¹ 『저항하는 평화』 서경식 외 지음, 전쟁없는세상 엮음, 2015년 1월, 오월의봄

사람도 있었다. 또 이 당시에는 중복처벌이 비일비재했는데 형을 살고 나오는 병역 거부자에게 다시 입영영장을 발부해 집총을 거부하면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 여호와 의 증인 정춘국 씨는 3차례에 걸쳐 7년 10개월을 이런 방식으로 복역했다.

한편 여호와 의 증인이 아닌 종교인들도 병역거부를 했다. 기독교 신앙에 영감을 받고 병역거부를 한 김홍술 목사나 효림 스님 같은 종교인이 그들이다. 다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병역거부를 했기 때문에 알려진 사례가 많지 않다.

3. 민주화된 정부에서의 병역거부, 양심선언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양심선언이라는 이름의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일체의 전쟁과 군대 모두를 거부하는 완전거부자들은 아니었고, 군 입대를 한 뒤에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양심선언을 하고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백골단 해체를 주장하거나 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폭로하며 군복무를 거부했다. 당시에는 병역거부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전이었고, 당사자들도 자신의 행위가 병역거부라는 걸 인식한 건 아니었지만, 명백하게 정치적인 병역거부자들이었다.

4. 병역거부 운동의 시작

2001년 불교신자 오태양이 공개적으로 병역거부 선언을 하면서 병역거부가 비로소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인권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많은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청년들이 병역거부에 동참했다. 오태양의 병역거부 이후로 해마다 4~5명이 다양한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여호와 의 증인까지 헤아리면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해마다 700여명의 젊은이가 감옥에 가고 있고, 해방 이후 지금(2016년)까지 약 1만 7천명의 젊은이가 총을 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2000년 이후에만도 무려 7000명 정도가 감옥에 간 것이다.

병역거부 운동이 등장하면서 변화된 지점도 있다. 그 이전에는 여호와 의 증인들은 일단 훈련소에 입소해 집총을 거부하고 군사 법정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보통의 경우 항명죄로 2~3년씩 형을 선고 받던 것이, 병역거부 운동 이후에는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채로 재판을 받고 재징집 되지 않을 최소 형량인 1년 6개월 실행 선고를 받게 되었다.

II. 현재 상황과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병역거부자 처벌의 문제점

1. 병역거부자 현황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은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540여명에 달한다.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90% 정도가 한국에 수감되어 있다. 그 중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병역거부자들도 있다. 병역거부를 사유로 망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망명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최근 들어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망명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는 점을 살펴본다면 집계되지 않은 병역거부자를 포함해서 적어도 540명 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역거부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감옥 생활을 한다. 망명을 위해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병무청은 병역기피자로 간주하고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2. 병역거부자 처벌의 문제와,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한미대사관은 해마다 자국 국회에 보고하는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탄압을 종교의 자유 카테고리에서 다루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는 것을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화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에 가시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사상에 따른 행동 때문에 감옥에 가야한다면, 이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는 이처럼 법적인 개념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인 차별과 권리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병역거부자들은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국가 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는다. 이는 병역거부자들만이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만, 병역거부자들이 이에 적용되는 것은 병역거부가 전과가 되어서기 때문에 병역거부자에 대한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더 직접적이고 생계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권리 침해 사례도 있다. 2007년 어느 여호와의 증인은 한 증권회사에 합격했으나 연수원 입소 직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다.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전과² 때문이었다.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어느 공단의 기술직 6급 채용에 합격했지만, 곧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입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² <‘양심적 병역거부자’ 합격통지서 받고도 입사취소>, 한겨레신문, 2007년 12월 18일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서 명백한 차별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³

3. 거듭되는 무죄판결과 헌법재판소

2000년 이후로 한국 사법부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거의 예외 없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있다. 형량이 정해져있다고 해서 재판부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 침해와 실제적인 차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재판부가 늘고 있다. 2004년 서울 남부지법의 이정렬 판사가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이후로 지금(2016년 8월)까지 모두 여섯 군데 재판부에서 총 1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2015년 이후에만 4개 재판부에서 9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2004년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과 2011년에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오히려 하급심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2016년 6~7월에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이제 법리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병역거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는 대답이 74.3%, 대체복무제 없이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대답이 63.4%가 나왔다.

2016년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또 한 번의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올라와 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2015년) 7월 병역법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거듭되는 무죄판결과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차별과 권리 침해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을 끌고 있다.

III. 한국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그룹들의 입장

1. 국제사회의 목소리

국제사회에서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는 널리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자격 요건으로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가 명시되어 있을 정도다. 또한 유엔은 기회가 될 때마다 회원국들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한국 정부 또한 여러 차례 유엔의 권고를 받고 있다. 굵직굵직한 것만 추려도 다음과 같다.

³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공단 채용 합격 취소.. 차별"> 경향신문, 2012년 12월 21일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35호 결의안
2004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1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2013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

가장 최근에 나온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이전 권고안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수감 상황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이 준비 중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병역거부자들을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자들과 기꺼이 연대하고 있다.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를 비롯한 웨이커 소속 단체들은 한국 병역거부운동이 촉발될 당시 한국의 시민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은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한국의 시민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한국 병역거부와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도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을 널리 알리며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국제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는 한국의 전쟁없는세상과 국제 엠네스티,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독일의 인권 단체 커넥션(Connection e.V.)이 공동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펼쳐 108개국 8천여 명의 시민들의 탄원서를 모아 국방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2. 한국 정부의 입장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은 병역거부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2000년대 초반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남한과 북한이 대치된 특수한 상황이고, 국민 여론 때문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가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70%가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 정부의 평계와 다르게 국민 여론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세계대전 당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점이나 전쟁 시기에 가장 광범위하게 병역거부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관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핑계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국 정부 안에서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존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방부는 2007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복무제도가 전면 백지화되었다.

3. 국내 시민 단체들의 활동

해방 후 2000년까지 1만 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전혀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던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데는 한국 평화인권 단체들의 활동 덕분이었다.

46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서 만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면서 대체복무제도 입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전쟁없는세상’은 이후 병역거부 운동을 이끌어가면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과 권리 침해를 알리는 한편, 병역거부자들의 평화적인 양심을 널리알리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민가협 등의 단체들이 병역거부자들의 권리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IV.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도

1.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과 우려지점

병역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은 이미 존재한다. 바로 대체복무제도다. 대안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어서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체복무 기간이 1.5배가 넘어서면 그것은 대체복무의 의미라기보다는 또 다른 징벌적 성격이 강하게 되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적지 않은 분들이 안보 불안이나 대체복무제도의 부작용, 병역 거부자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누가 병역거부자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다들 군대 안 가고 대체복무 하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는 말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미가 군사적인 수단만을 지칭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과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자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2017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만은 비교적 최근인 2000년에 정부의 주도 아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대만은 세계 1위 군사비 지출국인 중국과 군사적인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다. 대만도 처음에는 우리와 비슷한 우려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이나 난이도를 높게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막상 제도를 운용해본 결과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대체복무를 신청하지 않아 오히려 기간을 줄이고 난이도를 낮춰야만 했다. 안보 공백이나 군입대 대폭 감소 같은 우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정부도 2007년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결정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우려 지점들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없진 것이 대체복무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2.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의미와 사회적인 이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체복무제도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점을 가져온다. 첫째로 대체복무 덕분에 사회복지 영역이 탄탄해진다. 독일은 징병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일어났다. 당시 징병제 중단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되게 들었던 이유가 대체복무제가 없어지면 사회복지에서 공백이 너무 커진다는 점이었을 정도로 대체복무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둘째로 군인들의 처우와 인권이 향상된다.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 이전에 군인들의 인권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대체복무 시행 이후 군 당국이 훌륭한 인력을 대체복무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인권과 군인들에 처우가 대폭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 도입은 국가 안보에 대한 평화적이고 인권적인 접근을 높인다. 안보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무기 중심의 군사 안보에서 대안적인 인간 안보, 사회 안보 개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군축을 대체복무도입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V. 맺음말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상황과, 한국의 병역거부와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입장,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대체복무제도에 정리해봤다.

한국은 현재 가장 많은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 사회와 국내 시민사회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십년이 넘게 똑같은 핑계만 대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것, 한국 정부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어가고, 자국민들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더더욱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병역거부권 인정에 한국 정부가 오히려 앞장 서 나서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한 ‘2016 영문콘텐츠사업’ 제2차 보고서입니다.